

이천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 번호	592호 관련
----------	---------

제안년월일 : 2002년 7월 15일

제 안 자 : 자치행정위원회

(김학인 위원장 외 6인)

1. 수정이유

주민자치센터설치 및 운영에 있어 그동안 행정자치부에서 시범운영 결과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보완하고자 마련한 개정내용중 주민자치위원회와 관련한 위원회 구성에 있어 시의원의 당연직 고문 제도도입은 시의원으로써 주민자치 참여가 선택적 참여사항이 아닌 필연적인 의무적 참여사항임에도 이를 불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어 이를 포함한 관련 조문내용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수정주요골자

- 주민자치위원회의 위원 구성원중 새로이 도입한 시의원의 당연직 고문제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불필요한 규정을 정비함.
(안제17조 제1항, 제5항)
- 당연직 고문에 대하여 임기전에 해촉할 수 있도록 한 단서 규정을 삭제함. (안제20조 제1항)

이천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이천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중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제17조 제1항중 “당연직 고문이 될 수 있다”를 “당연직 고문으로 한다”로 하고, 동조 제5항중 “고문은 읍·면·동장이 위촉하되, 당연직이 아닌 고문을 위촉하는 경우에는”를 “당연직이 아닌 고문은 읍·면·동장이 위촉하되”로 한다.

안제20조 제1항중 단서를 삭제한다.

부 칙

이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수정안 조문 대비표